

#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

## □ 사업개요

-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생활지원비 지원

## □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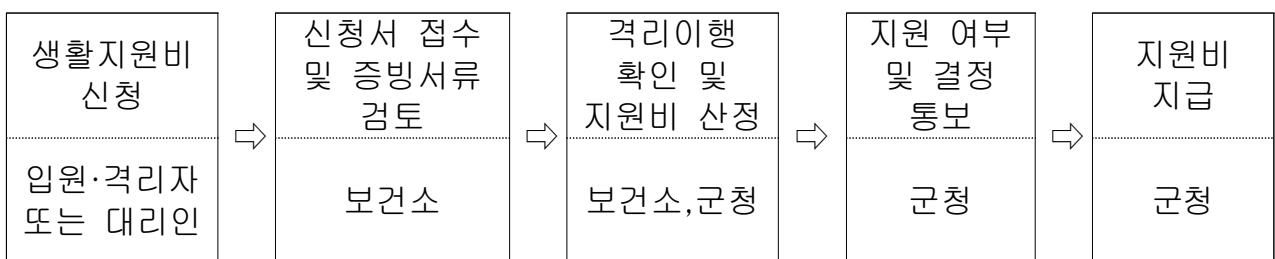
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·격리자(조치이행자)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
- (제외) 공공기관 근로자 및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

## □ 지원내용

- 가구원 수 및 격리(입원)기간에 따라 45 ~ 146만원/월 지원

## □ 신청방법

- 신청장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절 차



- 제출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신청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등본 등

※ 문의 :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(☎061-390-7306)